2017년 대구광역시 남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인)

◈ 우리 구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2,87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04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739억원)보다 136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9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314억원, 지방채는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7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0.7%입니다.

◈ 우리 구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0.4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세, 시재원조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이 가중되어 새로운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여건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nam.daegu.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조원호(053-664-212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남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2,875	2,671	204	2,739	2,596	143
	세출예산	2,875	2,671	204	2,739	2,596	143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7.5	14.4	3.1	21.4	20.4	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40.7	35.2	5.5	42	39.2	2.8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0.4	3	△3.4	10	5	5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구-4 부산(중구,남구,사상구,서구,북구,동구,금정구,영도구,연제구,동래구,수영구) 대구(중구,서구,남구,),대전(동구,중구,대덕구),울산(중구,동구),광주(동구,남구),인천(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87,493	280,500	0	4,007	2,98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84,985	214,333	241,221	267,069	287,49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79,600	100	209,100	100	235,400	100	262,000	100	280,500	100
지 방 세	14,628	8.14	14,921	7.14	15,605	6.63	16,485	6.29	18,050	6.43
세외수입	16,613	9.25	7,506	3.59	7,594	3.23	8,041	3.07	8,275	2.95
지방교부세	5,400	3.01	5,400	2.58	5,400	2.29	5,400	2.06	5,400	1.93
조정교부금 등	36,617	20.39	38,617	18.47	43,302	18.39	48,968	18.69	59,576	21.24
보 조 금	106,342	59.21	132,253	63.25	151,867	64.51	169,802	64.81	166,452	59.34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10,403	4.98	11,632	4.94	13,304	5.08	22,747	8.1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87,493	280,500	0	4,007	2,98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84,985	214,333	241,221	267,069	287,49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79,600	100	209,100	100	235,400	100	262,000	100	280,500	100
일반공공행정	6,923	3.85	9,650	4.61	7,898	3.36	15,641	5.97	17,763	6.33
공공질서 및 안전	299	0.17	383	0.18	423	0.18	519	0.2	733	0.26
교육	245	0.14	307	0.15	362	0.15	479	0.18	4,940	1.76
문화 및 관광	2,054	1.14	2,736	1.31	2,679	1.14	11,295	4.31	3,909	1.39
환경보호	4,131	2.30	4,558	2.18	4,872	2.07	5,203	1.99	6,439	2.30
사회복지	99,761	55.55	123,953	59.28	134,788	57.26	154,559	58.99	165,059	58.84
보건	5,461	3.04	5,619	2.69	6,884	2.92	6,873	2.62	8,040	2.87
농림해양수산	341	0.19	294	0.14	917	0.39	1,829	0.7	128	0.05
산업·중소기업	655	0.36	3,723	1.78	717	0.3	403	0.15	974	0.35
수송 및 교통	2,943	1.64	2,619	1.25	2,174	0.92	2,870	1.10	5,000	1.78
국토 및 지역개발	6,528	3.63	5,017	2.40	17,294	7.35	7,880	3.01	10,098	3.6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1,970	1.10	2,217	1.06	2,738	1.16	2,715	1.04	3,129	1.12
기타	48,289	26.89	48,025	22.97	53,653	22.79	51,734	19.75	54,289	19.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01,378**	**304,235**	**310,374**	**312,811**	**322,799**	**1,551,597**	**1.70%**
자 체 수 입	28,504	29,005	29,521	30,051	30,554	147,635	1.80%
이 전 수 입	246,493	248,384	253,316	254,515	263,271	1,265,979	1.7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381	26,846	27,537	28,246	28,975	137,985	2.40%
세 출	**301,378**	**304,235**	**310,374**	**312,811**	**322,799**	**1,551,597**	**1.70%**
경 상 지 출	65,304	70,432	74,673	78,947	83,256	372,612	6.30%
사 업 수 요	236,075	233,804	235,701	233,865	239,543	1,178,988	0.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67,069**	**287,493**	**20,423**	**7.65**
대구광역시 남구	267,069	287,493	20,423	7.65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대구 남구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49% (9.39%)	280,500 (280,500)	49,073 (26,339)	231,427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2.08% (8.37%)	316,600 (316,600)	69,915 (26,499)	246,685	0	0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7.40	15.70	14.80 (9.86)	14.44 (9.36)	17.49 (9.39)
최종예산	19.52	17.72	17.78 (8.55)	22.08 (8.37)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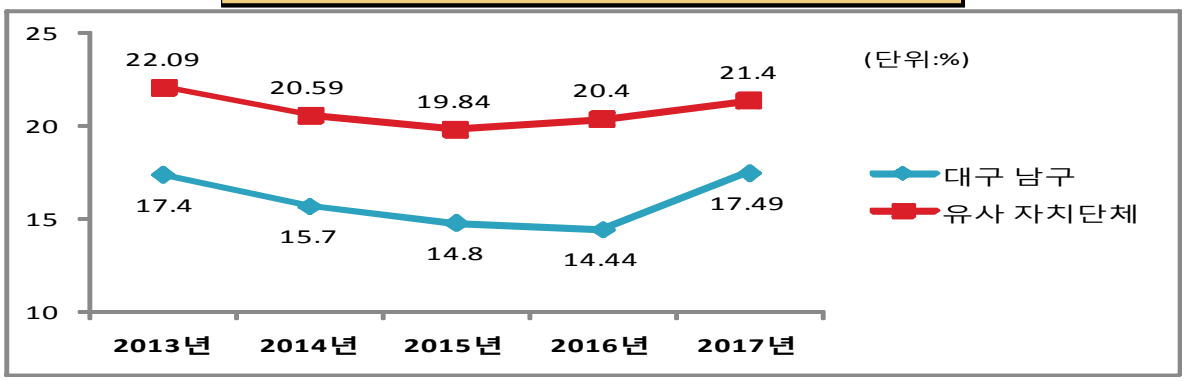

☞ 2017년 재정자립도가 9.39%로 지방세 세원발굴 및 징수강화 노력에도 보조금 증가등에 따른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음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0.6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0.66% (32.55%)	280,500 (280,500)	114,048 (91,303)	166,452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45.0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5.03% (31.31%)	316,600 (316,600)	142,563 (99,127)	174,037	0	0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40.79	36.75	35.49 (30.54)	35.19 (30.11)	40.66 (32.55)
최종예산	41.93	39.53	41.98 (32.75)	45.03 (31.3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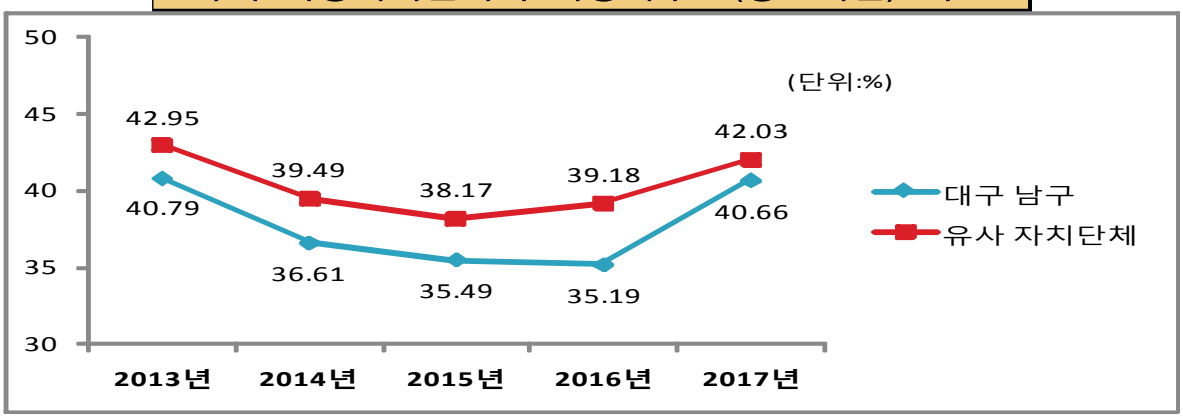

☞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세입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조정교부금 비율의 증가와 자체세입 중 보전수입 등의 증가로 2017년 재정자주도가 유사 자치단체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대구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60,585	279,457	1	69	68	18,905	279,525	△18,940	△35
일반회계	257,753	275,197	0	0	0	18,747	275,197	△17,444	1,303
기타 특별회계	2,626	3,815	0	69	69	158	3,884	△1,258	△1,100
기 금	206	445	1	0	△1	0	444	△238	△23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7,730	△8,595	△8,575	△10,132	△18,940
통합재정수지 2	249	97	171	250	△35

☞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13년부터 최근 4년간 흑자재정이었으나 전년도와 비교해 2017년 기타특별회계 지출이 45% 증가, 기금 지출이 116% 증가하여 35백만원 적자임.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76,791	315,463	2	119	118	39,862	315,581	△38,790	1,072
일반회계	273,178	310,767	0	0	0	38,758	310,767	△37,589	1,168
기타 특별회계	3,422	4,443	0	79	79	1,104	4,523	△1,101	3
공기업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기 금	192	253	2	40	39	0	291	△99	△99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7,645	△15,301	△14,812	△22,517	△38,790
통합재정수지 2	112	106	117	16	1,072

☞ 일반회계에서 기타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로 1,100백만원 전입되어 2016년 최종예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4년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함.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6**	**16,801**
여성정책추진사업	2	41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4	16,38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대구광역시 남구는 모델 (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80,500	78	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 원 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 원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기 타	제11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8**	
건설방재과	봉덕3동 삼양빌라와 태성맨션 사이 도로 아스콘 포장	30	
〃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인근 인도블럭 교체(대덕로34길, 대덕로 32길)	30	
민원정보과	신일교회 사거리 CCTV 설치	10	
도시재생총괄과	봉덕2동 주민센터 소방도로 가로수 전지작업	8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자료실을 참조하세요.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77	168	155	284,507	264,485	20,022
의회사무과	1	1	4	2	1,519	1,528	△9
기획조정실	1	3	8	9	7,833	6,396	1,437
주민생활국	1	23	47	44	179,058	165,972	13,087
도시건설국	1	14	29	32	19,935	16,315	3,619
안전행정국	1	29	67	58	53,539	53,996	△456
보건소	1	3	6	6	10,340	9,018	1,322
대덕문화전당	1	4	7	4	2,825	2,263	562
주민센터	해	당	없	음	9,459	8,999	46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49	40.66	58.84	13.35	65.41	162.3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2	△6
	부단체장	41	37	△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8	182	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7	45	△2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6	50	△6
	의원국외여비	23	23	0
지방보조금		1,398	1,148	△25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46	1,146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92	1,133	△359
공무원 일·숙직비		60천원/1인	60천원/1인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대구광역시에 합산반영)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대구광역시에 합산반영)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대구광역시에 합산반영)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1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 부적정	11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